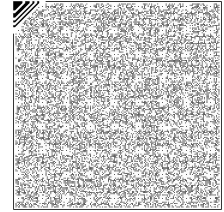
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붙임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728호) 공포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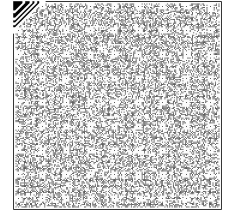
- 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 공포(총리령 제1728호, '21.9.10.)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 주요 내용 >

- 가.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('22.1.1 시행)
- 나.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·보관 의무화('21.11.11 시행)
- 다.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보관창고 공동사용 인정
- 라.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
 - *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·식용란선별포장업·식육포장처리업 해당
- 마. 위생화 착용하고 축산물 작업장 외부 출입 시 처분 강화(영업정지 3일→15일→1개월)
- 바. 감염병 발생 시 실시간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수료 가능
- 사.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사육농장 비대면 HACCP 심사 가능
- 아. HACCP 신규교육 인증 후 6개월 내 미수료 시 시정명령
- 자. HACCP 교육수료증 거짓·부정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

- 2. 개정 사항은 2021년 9월 10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728호). 끝.

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중앙부처(법령 담당부서),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농 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), 농림축산검역본부장(동물검역과장), 시·도 축산물 관련 부서, 축산관련 단체

주무관 **고성환** 사무관 **김충현** 축산물안전정책 전결 2021. 9. 10.
과장 **김철희**

협조자

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-6595 (2021. 9. 1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 / www.mfds.go.kr
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

전화번호 043-719-3247 팩스번호 043-719-3270 / ksh4909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